# 중앙투자심사 결과분석과 시사점

## 투자심사의 의의와 결과분석의 필요성

### ○ 투자심사제도 :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의 일환

-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·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'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자체 또는 상급기관이 심사하는 제도
  - \* 투자심사기관은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되고 사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심사기관이 정해짐

〈사업유형 및 규모별 심사기관〉

	사업시행기관	사업유형	투자심사기관				
			기초자치단체	광역자치단체	중앙심사(행정자치부)		
	기초	투자사업	20~40억 원 미만	40~100억 원 미만	100억 원 이상		
		행사성·홍보관 사업	3~5억 원 미만	5~30억 원 미만	30억 원 이상		
	광역	투자사업		40~200억 원 미만	200억 원 이상		
		행사성·홍보관 사업		5~30억 원 미만	30억 원 이상		

# ○ 투자심사기준

- 투자심사의 기준은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, 가용재원, 투자우선순위 등을 토대로 사업별 재원 조달능력 판단조서, 실무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

### ①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·사회정책과의 부합성. ② 중·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, ③ 소요자금 조달

〈심사 기준: 사업의 필요성,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7개 분야로 구분〉

- 및 원리금 상환 능력, ④ 재무적·경제적 수익성,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, ⑥ 주민숙원·수혜도 및 사업요구도,
- ⑦ 사업규모, 사업비의 적정성

## ○ 투자심사결과 분류

- 심사분이는 「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」에 의거하여 12개로 구분 - 심사결과는 적정, 조건부, 재검토, 부적정으로 구분되며, 일반적으로 재검토 및 부적정을 미승인으로 볼 수 있으며, 이외에도
-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은 반려 조치(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)

# ○ 중앙투자심사 결과분석의 필요성

- 중앙투자심사 결과의 재검토 사유를 파악하여 투자심사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며, 2011~2015년 동안의 1,617건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검토

중앙투자심사 결과분석

### − 2011~2015년 동안 총 1,617건의 심사가 진행되었고, 2011년 187건에서 2015년 446건으로 연평균 약 19% 증가

○ 연도별 중앙투자심사 분석 결과

- 연도별 적정과 조건부의 사업 통과비율은 평균 68.58%로 나타났고 연도별로는 2011년 80.21%를 제외하고는
- 유사한 수준

중앙투자심사 결과(2011~2015년)

### 600 (단위: 건) 500 400 327 300 287 200 196 149 150 100 155 159 91 66 37 0 2012년 2013년 2011년 2014년 2015년 ■ 반려+부정적+재검토 ■ 적정+조건부 ○ 분야별 중앙투자심사 분석 결과

## - 12개 분야 중에서 체육 50%, 문화 및 관광 57.26%로 평균통과율인 68.58% 보다 낮은 통과비율

공공질서 및 안전

과학기술

교육

300건(19%), 환경보호 276건(17%)

33

25

〈분야별 중앙투자심사 결과(2011~2015년)〉

- 분야별로 살펴보면, 심사건수 중에서 문화 및 관광이 379건(23%)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, 그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

반려 및 부적정 적정 부문 계 재검토 조건부

### 0 10 21 6 17 0

69.70 76

75

(단위: 건, %)

계

1

105

40

157

4

2

2

통과비율(%)

(단위: 건,%)

			'		0	70				
국토 및 지역개발	300	4	105	156	35	63.67				
농림해양수산	97	0	40	49	8	58.76				
문화 및 관광	379	5	157	208	9	57.26				
보건	13	0	4	8	1	69.23				
사회복지	58	1	17	33	7	68.97				
산업중소기업	199	1	48	133	17	75.38				
수송 및 교통	186	5	45	82	54	73.12				
일반공공행정	45	0	11	33	1	75.56				
체육	2	0	1	1	0	50				
환경보호	276	6	41	143	86	82.97				
계	1,617	22	486	887	222	(평균) 68.58				
중앙투자심사 결과의 재검토 사유										
<ul><li>− 2011~2015년 동안 1,617건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중 반려, 부적정 및 재검토는 508건이며, 이중 재검토는 486건(95%)</li><li>− 재검토 사유는 크게 7가지(재원, 계획조정, 사전절차 미이행, 규모조정, 책임분양, 기존 재검토 사유 미이행, 기타)로 구분</li></ul>										

### 계획조정 36건(22.93%)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 차지 - 국토 및 지역개발은 사전절차 미이행 21건(20%)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되었고, 책임분양 11건(10.48%)으로 인한 문제가

재원

0

50

27

계획조정

0

13

2

재검토

교육

국토 및 지역개발

농림해양수산

문화 및 관광

보건

사전절차 미이행 56건(11.52%)을 차지

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부분 언급됨 〈분야별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사유(2011~2015년)〉

재검토 사유 중 재원과 관련된 건수가 277건(57%)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, 그 다음으로 계획조정 74건(15.23%),

- 재원과 관련된 사유 277건(57%)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유가 128건(46%)이며, 문화 및 관광에서는 유달리

미이행 조정 분양 보완 공공질서 및 안전 10 0 0 0 0 0 0 10 과학기술 6 0 0 0 0 0 6 0

규모

0

2

1

책임

11

0

재검토사유

0

2

1

7

0

기타

6

0

2

0

사전절차

0

21

9

### 71 23 36 18 0 3 1 0 0 0

사회복지 6 3 3 5 0 0 0 17 산업중소기업 34 11 0 0 2 48 34 수송 및 교통 5 4 0 0 2 45 0 일반공공행정 4 2 0 4 0 1 0 11 체육 0 0 0 1 0 0 0 1 환경보호 32 1 0 41 1 1 0 6 계 277 74 56 38 11 11 19 486 11.52 비율(%) 57 15.23 7.82 2.26 2,26 3.91 100 주 : 1) 재원과 관련된 사유에는 국비, 도비 및 시비 등 불분명, 재원의 미확정, 재원분담기관 조정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안하는 사항,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을 포함 2) 기타 사유로는 민원, 타당성조사 미완료, 추진방식 등을 포함 중앙투자심사 결과의 시사점 ○ 재원확보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

### - 재검토 사유의 절반 이상이 재원확보 등에 관련된 내용이며 특히,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 사항은 재검토 사유에 486건 중 128건이 언급

# - 따라서 투자심사를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국비 등 재원확보 사항을 확정하고 중기지방재정

계획에 사업예산을 반영 후 의뢰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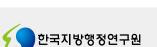
- 실현 가능한 계획마련 및 사전절차 이행
  -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에서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마련하고, '재검토' 이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여 심사 의뢰 필요

-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에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같은 사전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

심사를 의뢰해야 하며, 책임분양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 필요

내용문의: 김기민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위원, 02-3488-5711, kmkim@krila.re.kr)

지난호 보기: 지방보조사업 관리시스템, 개선 시급하다(이삼주 선임연구위원) 원문보기 ♪



이메일: brief@krila.re.kr COPYRIGHT(C) BY KRILA, ALL RIGHTS RESERVED

(26464)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(반곡동) TEL: 033-769-9822 FAX: 033-769-9805